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201호
------	---------

제출연월일 : 2025. 1. 23.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이 장기간 동결됨에 따라 시험종사자들의 불만 가중 및 근무 지원자 감소
- 이에 시험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시험종사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시험종사자 수당 : 반일 기준 6만원(2010년 인상 후 올해까지 동결)

2. 주요 내용

- 가. 충청남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지급기준 준용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2조)
- 나. 일부 어구 수정(안 제2조)

3.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다.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라. 관련법규 및 타 시도 사례

-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10. 30. ~ 11. 19.)
-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11. 19., 여성가족정책과)
-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1. 5., 감사위원회)
-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10. 28., 정책기획관)
- 자. 비용추계서 : 미첨부 대상(2024. 11. 12., 예산담당관)
-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0. 3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를 “각 호에” 로,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 를 “충청남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03.19, 2023. 8. 10.>

제2조(수당)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8.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05.10.]

제3조(여비)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02.06, 82.04.01, 2023. 8. 10.>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0.> [제5조에서 이동 <2005.05.10.>]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타 시도 사례

□ 자체기준 적용 : 5개 시도

- 인사혁신처 기준액 + 2만원 또는 1만원 추가 지급

※ 인사혁신처 기준 적용 : 12개 시도

구 분	지급 현황	추가 수당	지급근거	비 고
부산	1일 11만원, 반일 8만원	문제책 및 답안지 이송 수당 2만원	조례	'24년 시행
울산	1일 11만원, 반일 8만원	-	조례	'25년 시행
전북	8만원	-	내부 방침	'23년 시행
경북	8만원 (’25년부터 2만원 추가 인상)	-	조례	'21년 시행
경남	1일 10만원, 반일 7만원	본부요원 시간연장수당 2만원	내부 방침	'21년 시행

□ 타 시도 조례 현황 ※ 자체기준 적용 시도

구 분	내용	비 고
부산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u>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u> 할 수 있다.	
울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u>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u> 할 수 있다.	'25년 개정 추진
전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u>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u> 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경북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u>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u> 할 수 있다.	
경남	수당은 <u>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지급</u>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24 - 75호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2. 개정 이유

-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이 장기간 동결됨에 따라 시험종사자들의 불만 가중 및 근무 지원자 감소
- 이에 시험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시험종사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시험종사자 수당 : 반일 기준 6만원(2010년 인상 후 올해까지 동결)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지급기준 준용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2조)

나. 일부 어구 수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4. 11.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사담당관
- 전화 : 041)635-3532, FAX 041)635-304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담당관 담당자(041-635-35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물거리는 충남, 풀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충청남도



수신 인사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정 통보 (2024A충남073)

1. 충청남도 인사담당관 - 20760(2024. 10. 25.)호와 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규에 해당되어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성가족정책과장

주무관	김예선	여성정책팀장	이진숙	여성가족정책 진급 2024. 11. 19.	과장	박은연
참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과-2560	(2024. 11. 19.)	접수	인사담당관-22244	(2024. 11. 19.)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여성가족정책과	/	http://www.chungnae.go.kr/		
전화번호	041-635-2981	팩스번호	041-635-3034	/	hss0408@korea.kr	/ 대국민 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흥분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지사(인사담당관)
(경유)

제목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알림

1. 인사담당관-20764(2024. 10. 25.)호와 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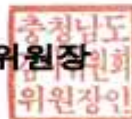
가. 규 정 명 :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평가결과 : 원안동의

- 1) 개정배경 :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 시험수당 지급 기준 변경
- 2) 검토결과 : 부패 유발 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부패영향 검토 결과 1부.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박다선	참여기획팀장	대결 2024. 11. 5.	감사위원장	전경
협조자					
시행	충청남도감사위원회-18098	(2024. 11. 5.)	접수	인사담당관-21465	(2024. 11. 5.)
무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http://www.chungnae.net
전화번호	041-635-5401	팩스번호	041-635-3061	/ jsuni2@korea.kr	/ 대국민 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정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규구객의정량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대행투책의명명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절차	접근의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장치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발생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충청남도



수신 인사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제출(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인사담당관-20761(2024.10.25.)호와 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정 책 기 쉐 관 형

주무관	이주미	법무행정팀장	유연민	정책기획관	전일 2024. 10. 28. 경인행
첨조자					
시행	정책기획관-22344	(2024. 10. 28.)		접수	인사담당관-20881 (2024. 10. 28.)
주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석읍 충남대로 21, 정책기획관실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136	팩스번호	041-635-3496	/ zoon1913@korea.kr	/ 비공개(5)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4. 10. 2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인사담당관-20761(2024. 10. 25.)호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시험종사자 수당 : 반일 기준 6만원(2010년 인상 후 올해까지 동결)			
주요 내용	○ 인사혁신처 지급기준 준용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2조) - (변경 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 (변경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자체기준 적용 :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경북, 경남) - 인사혁신처 기준액 + 2만원 또는 1만원 추가 지급 ○ 기타 조항의 자구 등을 수정함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의 현실화 필요에 따라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정찬형(☎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이주미(☎3136)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흥분해!'



충청남도



수신 인사담당관

(경유)

제목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검토 결과 알림

1. 인사담당관-20762(2024.10.25.)호 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 결과,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	김수현	예산총괄팀장	김기훈	예산담당관	2024. 11. 12.
협조자				양민서	
시행	예산담당관-15242	(2024. 11. 12.)	접수	인사담당관-21873	(2024. 11. 13.)
무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	/ http://www.chungnas.go.kr		
전화번호	041-635-3155	팩스번호	041-635-3036	/ ksh5322@korea.kr	/ 부문공개(5)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현황)**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시험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험종사자에 수당 지급
 - 道 시행* 시험종사자 수당: 반일 6만원, 전일 9만원(휴일기준)
 - * 7·9급 공채, 공무원직, 수렵면허 등
- **(문제점)** 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은 타 시험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종사자 불만 및 선발 애로
 - ※ 간호사 시험: 118,000원, 간호조무사 시험: 87,500원, 선거사무원: 271,000원
 - 2010년 반일 기준 6만원 설정 이후 14년째 수당 동결
 - ※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증 집행기준
- **(수당 현실화)** 수당을 증액하여 시험의 원활한 운영과 우수한 시험관 확보
 - 시험종사자 수당 지급액(안) : 1일 11만원, 반일 8만원(증 2만원)
 - ※ 2010년 대비 소비자물가 1.292배 상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1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수당이 증가하더라도 연간 1억원 이내의 비용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구분	인원	지급예상액	기본수당 (6만원)	추가수당 (2만원)	비고
합계	1,031명	82,480천원	61,860천원	20,620천원	'24년 기준
9급 공임	799명	63,920천원	47,940천원	15,980천원	
7급 공임	138명	11,040천원	8,280천원	2,760천원	
공무직 청원직	54명	4,320천원	3,240천원	1,080천원	
수렵면허	40명	3,200천원	2,400천원	8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
연락처	(041) 635 - 3532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충청남도



수신 인사담당관
(경유)

제목 인권영향평가 결과 일림(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인사담당관-20763(2024. 10. 25.)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규 정 명 :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평가결과 : 원안동의. 끝.

자치행정 *관행*

인권보호관	오은비	인권센터장	윤담	자치행정과장	전신숙	간경 2024. 10. 30.
협조자	인권보호관	김창일	인권보호관	유가		
시행	자치행정과-14771	(2024. 10. 30.)	접수	인사담당관-21029	(2024. 10. 30.)	
우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 http://www.chungnas.go.kr/
전화번호	041-635-3615	팩스번호	041-635-3046	/ oojung12@korea.kr		/ 대국민 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